

# (사)한국노년복지연합 제품검증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 1. 취지

국어사전을 보면 「복지(福祉) : 행복한 삶」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년복지란 ‘노년기에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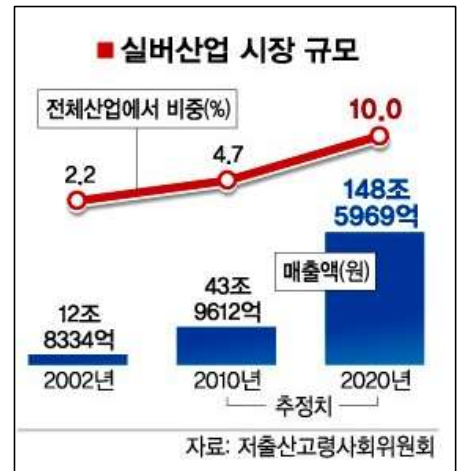
대개 복지증진이라고 하면 거시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정한 혜택을 지속적, 추가적으로 주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이미지가 연상됩니다. 또한 미시적으로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줌으로써 행복한 삶이 파괴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한노연’은 ‘주는 복지’는 적지 않은 재원의 투입이 필요함으로 개인 및 단체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이는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에서 제도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부분이며, ‘지켜주는 복지’는 NGO의 힘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뜻을 함께 하는 분들이 모여 출범하였습니다.

이미 대한민국도 초고령사회에 접어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0년 기준 55세 이상 인구 : 약 1,040만명 - 전체인구의 21.7% / 통계청 조사관리국)

이에 발맞추어 실버산업의 규모도 2002년 12조 8,334억원, 2010년에는 43조9,612억원 2020년에는 148조 5,9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버시장의 규모 확대에 따라 일부 비양심적인 제조, 생산, 유통, 판매업자들이 자신들의 영리만을 추구하기 위해 정보의 부족, 심신기능의 저하, 건강에 대한 불안 등 노년층 특유의 심리와 환경을 악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즉 효도관광 빙자, 경로잔치 빙자, 무료 식사제공 빙자, 상식이상의 고수익보장, 떼다방 등 불법 홍보관 등에서의 사기·최면상술 등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채널을 통하여, 저가의 불량상품을 고가로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부작용 역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한노연’에서는 실버시장에서 불량상품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양질의 제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노년층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노년층의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별첨1.과 같이 제품검증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 2. 근거 : ‘한노연’ 정관 제3조, 제4조, 23조의 ⑨ 및 제25조

2013년 12월 19일

(사)한국노년복지연합

이사장 김 영 일 (직인생략)

#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제품검증위원회운영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노년복지연합 제품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품검증이라 함은 검증대상상품의 차별성 여부, 회사의 경영상태, 표시사항의 적합성 여부, 각종 인허가증의 진위여부 등 검증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진정성을 객관적 절차에 따라 확인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차별성 여부란 검증대상 상품이 노년층에 판매 또는 제공되었을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적합성 및 독창성 그리고 유사한 상품대비 가격의 합리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3. 회사의 경영상태란 회사의 설립경과년도, 경영자 및 임직원들의 기업관, 윤리관, 직업관 등에 대한 인터뷰와 신청회사 사무실 또는 공장, 창고 실사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상품 및 기업이 실버산업에 지속적으로 기여가능성과 노년층소비자에 대한 도덕적 기업관을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4. 표시사항의 적합성여부란 검증신청자가 제출한 상품의 외부포장상태와 표시사항의 적정성, 안내서에 기재된 내용이 상품을 과대, 과장없이 노년층이 이해하기 쉽게 표기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각종인허가증의 진위여부란 검증신청자가 소지하였다고 주장하는 각종인허가증이 정확하게 법적으로 유효한 기관이 발급한 것으로서, 검증신청자가 해당기관으로부터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당서류를 발급받은 사실이 틀림이 없다는 사실을 해당기관 등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6. 전5항의 인허가증의 진정성에는 해당 검사기관의 적법성(설립의 신고, 인가, 승인여부) 여부, 정부 또는 기타 기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인정여부를 포함한다. 단, 인증 또는 인정에 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관례,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 위원회가 판단한다.
7. 검증 신청자라 함은 (사)한국노년복지연합(이하 ‘한노연’)에 협력업체 등록신청서와 부대서류 및 자료등을 제출하여 검증을 받고자 하는 상품과 서비스등을 제조 또는 유통, 공급하고자 하는 자(회사)를 말한다.
8. 1차 조사라 함은 제보자의 제보 내용 또는 검증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서류등의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문서로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9. 2차 조사라 함은 1차 조사를 바탕으로 검증신청자 또는 피제보자의 회사 및 공장, 창고의 실사와 임직원들에 대한 인터뷰 등을 통하여 생산, 유통의 현장을 검증하는 공식적인 조사 및 판단을 의미한다.
10. 관련보험 가입이라 함은 실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노년층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지속적인 재화와 용역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험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관련보험의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11. 제품검증조회시스템이라 함은 최종소비자가 구입 또는 공급받은 상품이 ‘한노연’에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제공된 상품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제품검증의 사유) 제품검증의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신청, 의혹, 기타 검증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1. '한노연'에서 해당 상품의 적절한 검증절차를 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증을 완료한 것처럼 각종 문서 등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제보를 접수하였을 경우
2. 실버시장 즉, 노년층을 대상으로 우량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공급, 판매하고자 검증신청자가 '한노연'에 해당 제품의 검증을 신청한 경우

## 제2장 제품검증위원회 운영

제4조 (기능) 위원회는 검증신청자의 제품검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차 및 2차 조사 수행에 관한 사항
2.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증 결과의 확정에 관한 사항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의 요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제품검증 절차의 개선에 관한 사항
6.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검증 결과의 취소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등) ①위원회는 사무총장을 포함한 '한노연'의 임직원과 해당분야 전문가 등 1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또는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한노연'의 임원 또는 타 위원회 위원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위촉한다.
- 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임기 기간 중 결원이 발생하여 새로운 위원이 임명된 경우 그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 ⑤ 자문단은 현재 노년층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생산, 유통, 공급하거나 관련 장소를 제공하는 자로 구성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검증합격여부에는 참여할 수 없다.
- ⑥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처 직원 1명을 간사로 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③위원장은 위원이 제12조 제②항, 제③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위원의 자격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간사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위반여부가 확인되었을 경우 위원으로서의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이사장에게 해촉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③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자문위원) 위원회의 각종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3장 제품검증

제9조 (제품검증 절차) ①위원회는 검증신청자의 각종인허가증 취득의 진실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1차 조사는 정부에서 인정한 기관 및 민간단체의 조회 서비스로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제1차 조사의 경우에는 이사장의 판단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한노연' 사무처 직원으로 하여금 제출된 인허가증의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 (제2차 조사) ①제2차 조사는 2인 이상의 사무처 직원 또는 이사장이 조사원으로 위촉한 자로 하여금 제2차 조사를 진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당해 검증신청인과 이해 갈등관계가 있는 자는 제2차 조사원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된다.

③ 제2차 조사를 진행한 조사원은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제보방법) ①제보자는 위원장 및 사무처에 구술,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다.

②제보는 실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 (기피·제척·회피) ①검증신청자 또는 제보자는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특정위원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②위원은 당해 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③위원은 검증신청자와 개별적으로 전화, 이메일 등 일체의 접촉을 할 수 없다.

④위원은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절차적 권리의 보장) 위원회는 검증과정에서 제기된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도 검증신청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 (조사 착수 및 기간) ①2차 조사는 1차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제2차 조사원을 선정,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제2차 조사원은 실사를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보고를 완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차 조사원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사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기간연장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제2차 조사원은 검증신청자·제보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증신청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②제2차 조사자는 검증신청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검증신청자는 정당한 사유

가 없는 한 조사원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증신청자가 제①항 내지 ②항의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조사원의 결정으로 검증신청의 임의 취소 및 위원회에서 심의 중단 등을 이사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 (판정) ①위원회는 제1차, 제2차 조사결과보고서와 검증신청자가 제출한 자료 그리고 완제품 등을 토대로 합의를 통해 검증내용 및 결과를 확정한다.

②검증내용 및 결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 (검증결과서의 제출) ①위원회는 의결 후 10일 이내에 최종 검증결과서(이하“최종보고서”라 한다)를 ‘한노연’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최종 결과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증신청자의 기본정보
2. 제1차, 2차 조사결과보고서의 승인 여부
3. 관련 증거 및 증인
4. 검증결과에 대한 검증신청자 및 제보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 결과
5. 검증위원 명단
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 (조건부 검증허가) ①제품검증절차의 장기화 등으로 인하여 검증신청자의 경영, 영업 등에 장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는 조건부로 검증 신청자의 검증합격을 이사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검증신청자는 위 ①의 조건부 사항을 검증합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보완하여야 하며, 이의 이행이 지연될 경우 위원회는 검증허가의 취소를 이사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 (제보자와 검증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비밀엄수) ①위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조사결과 보고서에 제보자의 성명, 기타 인적사항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

②위원회는 제보자가 제품검증 관련 제보를 이유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검증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위원장, 이사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 (비공개 원칙 및 정보공개청구권) ①제19조에 따른 최종보고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검증신청자 및 제보자는 최종보고서의 열람 및 복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보자 보호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위원회는 제2차 조사원으로부터 최종 조사 결과 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14일 이내에 최종보고서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제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이에 상응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 ③제품검증과 관련된 기록물은 조사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2조 (결과의 통지) ①이사장은 제17조의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품 검증결과를 검증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은 제품검증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검증대상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재심의) ①검증신청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노연’에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한노연’은 재심의 요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서면으로 검증신청자 및 제보자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24조 (제품검증결과의 취소) ①검증신청자가 제품검증 완료 후 본래의 취지와는 다른 용도로 제품검증결과를 이용하거나, 검증필증을 해당 제품이외에 부착하여 노년층소비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될 경우 위원회는 제품검증결과의 취소를 심의, 의결하고, 이사장으로 하여금 검증신청자에게 이 취소사실을 통보하고, 해당 제품의 검증필증 사용을 제한하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검증신청자는 제품검증결과의 취소사실과 해당제품의 검증필증 사용제한을 통보받았을 경우 즉시 통보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단 통보내용에 불복하고자 할 경우에는 객관적인 사실과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검증신청자의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위원회를 이를 재심할 수 있다.

## 제4장 보 칙

제25조 (경비) ‘한노연’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세칙)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

## 부 칙(2013.12.19 )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